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43,317,111 | 13,299,513 |
| 일반회계 | 399,936,358 | 11,998,091 |
| 특별회계 | 43,380,753 | 1,301,423 |
| 공기업특별회계 | 27,182,370 | 815,471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9,532,398 | 585,972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7,649,972 | 229,499 |
| 기타특별회계 | 16,198,383 | 485,951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358,682 | 10,760 |
| 지하수관리특별회계 | 102,598 | 3,078 |
|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| 343,600 | 10,308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1,714,916 | 51,447 |
|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| 928,368 | 27,851 |
|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| 570,763 | 17,123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519,936 | 15,598 |
|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| 6,170,457 | 185,114 |
|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| 2,430,000 | 72,90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2,345,752 | 70,373 |
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| 713,311 | 21,399 |

제 2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532,69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일반운영비
3. 여비
4. 자산및물품취득비
5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